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과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일부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상 구분이 명확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유통규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조사·단속권한을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안 제9조제3항)

1) (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의 원산지 관리권한* 부여

*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과태료, 위반자 처분·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등

2)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단속권한이 없어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 중인 시·도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어려움 발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 2.)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u><단서 신설></u>	제9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연 락 처	(044) 201 - 2276